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동물권단체 케어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 발신: 동물권단체 케어,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가나다순)
■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 참조: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동물복지팀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복지 실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모든 사안이 많은 논의를 필요하지만, 동물단체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항목은 ★★★ 로 분류하였습니다.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논의, ★★ 상당한 논의**, ★보통)

	내 용
★★★	(시행규칙 4 조 4 항 1, 2 호) '신체적 고통'을 동물학대로 포함시키고 2 호에서 열, 전기, 물 삭제하지 말 것.
★★	(별표 9 동물생산업) 기존 뜬장 5 년 유예기간으로 폐지할 것.
★★	(별표 10 동물생산업)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일에 최소 2 회이상, 1 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옥외에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변경.
★	(시행규칙 4 조 5 항) 개인의 사진, 영상물 배포 금지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판례도 있는 위헌 소지있음.
★	(시행규칙 17 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1 천마리 이상,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사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필수로 함.
★	(별표 1)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별표 4) 동물보호센터 뜬장 규제.
★	(별표 9 동물생산업) 고양이는 소음에 매우 민감하고 스트레스받는 동물로 개, 고양이 분리 공간 제공함.
★	(별표 9 동물생산업) 75 마리당 관리인원 1 명->50 마리당 1 명으로 함.
★	(별표 10 동물수입업) 국내 동물생산업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기준을 따른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함.

2017.12.26 일

[제목: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개정안	수정안★★★
시행규칙 제 4 조(학대행위의 금지) ④ 법 제 8 조제 2 항제 4 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신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도구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정사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항의 취지는 인간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신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현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행위는 주로 인간이 신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 8 조 ②항 1 호~3 호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동물학대의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법 취지에 맞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란 골절, 파열, 상처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쇠사슬에 묶어 매달거나, 제주 개 악마트럭 사건 등처럼 작은 운송용 케이지에 개들을 4-6 마리씩 구겨넣고 최소 6 시간에서 최장 48 시간씩 방치하는 행위 등은 상해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동물들에게 극심하고 끔직한 고통을 주는 행위들로써,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동물보호법 8 조 ②항 4 호(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는 인간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시행규칙에서는 "법 제 8 조 제②항 제 4 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새로이 '신체적 고통'이란 단어를 삽입한 의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기존 시행규칙(2.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마저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나 고열, 물 등을 이용해서 동물을 학대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제 4 조 ④항의 1 호와 2 호는 국회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동물보호법 본 법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커다란 실수와 오류이며 따라서, 시행규칙 4 조④항 1 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하지 말고 '신체적 고통'을 포함시켜야 하며, 2 호는 삭제하지 말고 '열, 전기, 물, 도구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로 '신체적 고통'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2. 개별기준 라. 동물생산업 2) 사육실 바. 사육설비 바닥이 망 등으로 된 시설은	바. 사육설비 바닥이 망 등으로 된 시설은

<table>
<tr><td>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망 간격은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해야 하며, 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은 평판을 넣어 동물이 쉴 수 있어야 한다.</td><td>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도 5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td></tr>
<tr><td colspan="2">(수정사유)
뜬장이라는 사육시설은 바닥에서부터 공중에 떠 있는 철장으로 사람이 일하기 편리하도록 한 것일 뿐,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해와 고통이 따르는 시설물입니다.
뜬장의 신규 설치는 불허하면서, 내구성이 강한 기존의 뜬장은 평생 사용해도 좋다는 것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뜬장을 영구적으로 없애지 않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동물생산업에서 기존의 뜬장 시설은 5 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을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발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해야 한다”는 것은 동물의 발의 크기가 동물에 따라서 다르므로 산업기준으로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적절한 측정가능한 규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망”이나 “평판”의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td></tr>
</table>

<table>
<tr><th>개정안</th><th>수정안★★</th></tr>
<tr><td>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 개별 준수사항
라. 동물생산업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td><td>1) 사육하는 동물에게 최소 1 주일에 2 회 이상, 1 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옥외에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td></tr>
<tr><td colspan="2">(수정사유)
미국의 과거 동물복지법 입법청원 자료에 의하면, 동물이 운동을 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은 각종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번식견이 운동을 하지 않고, 평생 뜬장에 감금되다 시피 가두어져 있어서 정형외과 질환, 신장호흡기 질환, 뇨질환, 유방암, 일과성 세포종양, 피부과 질환, 갑상선기능저하, 인슐린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td></tr>
</table>

또 다른 미국의 보건성 동물실험지침에 의하면, 운동의 박탈은 동물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생리적인 장애, 행동장애 등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4 년 국내 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육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두뇌발달, 생리적인 장애, 행동장애 등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동물복지법은 이미 1980 년대에 실험시설, 번식장, 동물원과 같은 전시장에 수용된 동물이 수의사와의 상의하에 운동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서, 형식적인 규정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미국주법을 보면, 인디아나, 캔사스, 아이오와, 메인, 컨네티컷, 미주리,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버니아, 테네시, 텍사스,워싱톤, 위스컨신 등 미국의 여러 주에서 운동할 기회를 주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하루 2 번을 규정한 주도 많습니다. 또 운동시간은 절대 다수가 1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
시행규칙 제 4 조(학대행위의 금지) ⑤ 법 제 8 조제 5 항 단서에서 “동물보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u>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u>	<u>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동물보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u>
(수정사유)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는 동물보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진, 영상우,물을 판매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동물보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영상물을 판매 전시하거나 전	

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어 선량한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는 보도목적으로 영상물을 편집하여 전시 전달 상영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개인이나 법률에 따른 미등록 단체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신고 또는 제보목적으로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에 전달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은 헌법 21 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며,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2002.4.25. 2001 헌가 27).
서가은 호주 변호사(성남시 분당구)및 정희창 변호사(서초구 서초동 1706 정희창변소사 사무실)는 각각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며, 해외사례에 배치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인 의견으로 자문한 바 있습니다.
이법의 원래 취지가 과거에 흥미를 목적으로 잔인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인터넷에 게시하여 학대행위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실제로 흥미 목적이나 학대를 부추기는 목적으로 사진, 영상 등이 제작되어 유포되어 입법의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과잉입법으로 말미암아 일반 활동가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게시마저, 법률에 의해서 제약되었고,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게 할 수도 있어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시행규칙 제 18 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동물보호센터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수의사 1. 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법제 41 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중에서 동물보호센터가 위촉하되 1, 2, 3 은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table>
<tr><td>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1.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td><td></td></tr>
<tr><td colspan="2">(수정사유)
동물보호센터의 폐쇄성과 열악한 환경 및 운영 실태는 언론방송의 단골메뉴가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물보호센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1인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1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구성 인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동물단체 추천인사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도, 동물보호법 27 조에 따라 동물단체 추천인사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td></tr>
</table>

<table>
<tr><th>개정안</th><th>수정안★</th></tr>
<tr><td>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 3 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d>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td></tr>
<tr><td colspan="2">(수정사유)
동물보호법 제 3 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물의 5 가지 자유를 지키도록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 1 의 내용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동물보호법 제 3 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td></tr>
</table>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안	수정안★
[별표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2.개별기준 마. <u>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u>	<u>2) 사육설비 바닥이 망 등으로 된 시설은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도 5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시설의 망 간격은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해야 하며, 전체 바닥 면적의 30%이상은 평판을 넣어 동물이 쉴 수 있어야 한다.</u>
(수정사유) 사육시설 뜬장은 반려동물 생산업소이든지 유기동물 보호센터이든지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업소는 평생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동물보호센터는 생산업소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하는 곳입니다. 동물생산업에도 뜬장에 대한 규제가 있듯이,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동물보호센터의 뜬장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라. 동물생산업 2)사육실	

<table>
<tr><td>다) 개 또는 고양이를 2 마리 이상 공동사육하는 경우, 사육설비는 2 단으로 쌓아서는 아니 된다.</td><td>다)--, 사육실 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사육설비는 2 단으로 쌓아서는 아니 된다.</td></tr>
<tr><td colspan="2">(수정사유)
국내에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강아지 공장에 비해 고양이 공장은 매우 드뭅니다. 고양이는 집단 사육에 매우 취약한 동물로 강아지 공장보다 고양이 공장은 훨씬 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의 대량생산을 막지 않으면 유기 고양이의 수가 증가하며 길고양이 수 또한 비례할 것입니다. 고양이는 대량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산업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금부터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한 공간의 생산시설에 두도록 시행규칙에 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한 공간에서 대량생산되면 고양이들은 정식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와 고양이의 사육실 공간을 따로 분리하여야 합니다.</td></tr>
</table>

<table>
<tr><th>개정안</th><th>수정안★</th></tr>
<tr><td>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라.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마) 일반생산의 경우 번식이 가능한 12 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 75 마리당 1 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td><td>마) --
50 마리당--.</td></tr>
<tr><td colspan="2">(수정사유)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 수입업이나 판매업에 대해서는 개, 고양이 50 마리당 1 인의 인력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업의 희생양으로 평생 갇혀 살아야 하는 강아지 공장, 즉 생산업에 대한 기준은 개, 고양이 75 마리 당 1 인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td></tr>
</table>

동물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수입업이나 판매업보다 평생 동물들이 지내야 하는 생산업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하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업의 인력기준을 판매업 및 수입업보다 강화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별표 10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 개별준수사항 다. 동물수입업 (신설)	4) 동물수입업자는 동물을 수입할 때에, 수입하는 동물이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생산업이 준수하여야 할 복지기준에 맞는 해외생산업자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
(수정사유) 반려동물 수입업자는 중국 등 해외의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된 동물을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시행규칙에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반려동물 생산시설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식으로 생산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